

청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가단90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고A종교단체B교회

소송대리인 C

피고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원

담당변호사 김성현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변론 종결2020. 4. 23.

판결 선고2020. 5. 14.

주 문

1. 피고 E, F, G, H, I, J, K, L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6.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별지 1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9.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별지 1 목록 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9.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E, F, G, H, I, J, K,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 F, G, H, I, J, K, L의 각 부담으로 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D은 피고 M(피고 E, F, G, H, I, J, K, L로 선택한다)에게 별지 1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소장 청구취지 기재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996. 4. 24. 접수 제6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1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4. 16. 접수 제61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1 목록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4. 16. 접수 제61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N종교단체 총회 소속 본부교회로 전도, 교육, 구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이다.
- 2) 피고 ○은 원고의 담임목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 E, F, G, H, I, J, K, L(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별지 1 기재 각 토지의 매도인인 망 M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피고 D 앞으로, 1996. 4. 24.경 망 M의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4. 16.경 별지 1 목록 2, 3항 기재 각 토지(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9.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86.경 P교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Q교회로 변경되었고, 2000. 1. 1.부터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1996. 4. 23.경 및 1999. 4. 9.경 망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고와 명의수탁자 피고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D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한편, 원고와 망 M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매도인인 망 M의 상속인인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D을 상대로 무효인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D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D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은 맞다. 그러나 명의신탁자는 원고가 아니다. 원고는 1997.경 설립되었으므로 1996. 4. 23.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D은 1996. 4. 23.과 1999. 4. 9.경 망 M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매도인인 망 M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원고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9, 10, 갑 제16호증의7, 갑 제33, 34, 35호증, 을가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을가 제2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Q교회는 1992. 3. 29. 창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무렵인 1996. 1. 1. 서울 용산구 R으로 교회를 이전한 사실, Q교회의 목회자이거나 교인인 S, T, U, V, W(X와 동일인), Y(Z와 동일인), AA, AB, AC, AD, AE, C, AF, AG는 2017년 또는 2018년경에도 여전히 원고의 교인인 사실, 원고는 2000. 1. 1.경 Q교회의 소재지와 같은 주소에서 종교법인으로 법인격을 취득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존재하던 Q교회가 2000. 1. 1.경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인 원고로 조직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가 원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26호증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5, 6, 7, 9, 10, 11, 13, 16,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5, 13, 16, 19, 21, 32, 40호증,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원고의 상위조직인 N종교단체인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AH종교단체(총회장 AI)(이하 '교단'이라 한다)는 1969. 1. 1. 산하 노회와 교회 및 수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창립된 이후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고, 2008. 6. 20. 총회헌법을 개정하면서 N종교단체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교단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실행위원을 선출하고, 총회에는 사무국과 그 아래에 총무부, 선교부, 교육부, 출판부를 둔다(1992년 총회헌법 제49조). 실행위원회는 총회 파회기간 중의 본회 행정사무 전반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총회 최고의결기관이다(헌법 제50조). 교단총회의 수입은 노회 상납금, 각 기관의 헌금으로 구성되고, 실행위원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재정수지에 관한 결산보고와 익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예산편성을 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4조).

② 원고는 독립적인 종교법인이자 교단 총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본부교회로서 교단 총회가 그 상위기관이고, 임원 및 조직으로는 당회장, 선교부장, 교육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 감사가 있고(뒤에 관리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이 폐지되고,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서기, 예전부장이 신설되었으며, 재무부장은 재정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무국은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위한 실무자회의록(갑 제5, 13호증)에는 '국장(또는 사무국장)'의 결재란이 있고, 교단 총회의 진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④ 교단의 제29회 정기총회(1996. 4. 5. 개최)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구입비용을 지출한 건축영선비 874,269,820원을 포함한 4,080,695,514원에 대하여 승인하였는데, 위 건축영선비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위한 지출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교단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여 기도원을 구입하게 하였는데, 기도원 구입비의 항목은 'AJ'이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다.

⑤ 담당자 AK은 2002. 2. 20.경 이 사건 토지에 납골당 설치를 검토한 기안서를 작성한 뒤 사무국장을 거쳐 교단총회장의 결재를 받았다.

⑥ 교단은 2017.경 다른 부동산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인 소외 AL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5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20. 전부 승소하였다.

다. 소결

원고는 자신이 피고 D에 대한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D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E, F, G, H, I, J,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현수

별지